

< 판매원 계약서 >

편의상 닥터페이 본사 이현규를 (갑)이라 칭하고 지역 판매원을 (을)이라 칭하기로 한다. 양인은 상호 간 선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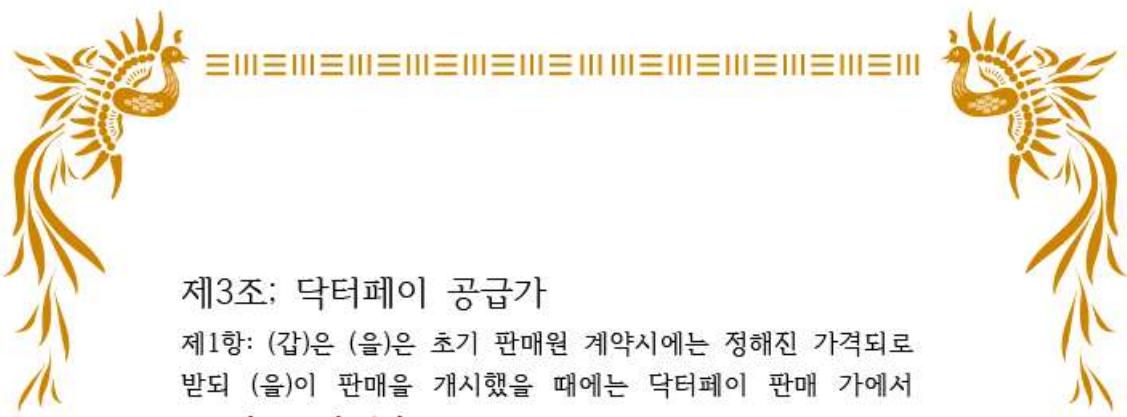
제1조: (갑)과 (을) 계약의 정의

제1항. (갑)과 (을)은 의료업계의 효율적인 경영과 빅데이터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의료 문화를 열어가기 위해 제작한 닥터페이가 소명의식을 완수 하는데 앞장서서 닥터 페이의 보급과 문화창달책임을 다하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제2조: (갑)과 (을) 의무

제1항: (갑)은 (을)이 지역에서 자사페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지원 업무를 이행 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소홀함이 있거나 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태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지역 판매원으로서 닥터페이의 활성화 및 판매 성장할 수 있도록 판매원으로서의 의무와 성실이행 사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제3조: 닥터페이 공급가

제1항: (갑)은 (을)은 초기 판매원 계약시에는 정해진 가격으로
받되 (을)이 판매을 개시했을 때에는 닥터페이 판매 가에서
60%에 공급해 준다.

제2항: (을)은 (갑)으로부터 페이를 60%에 공급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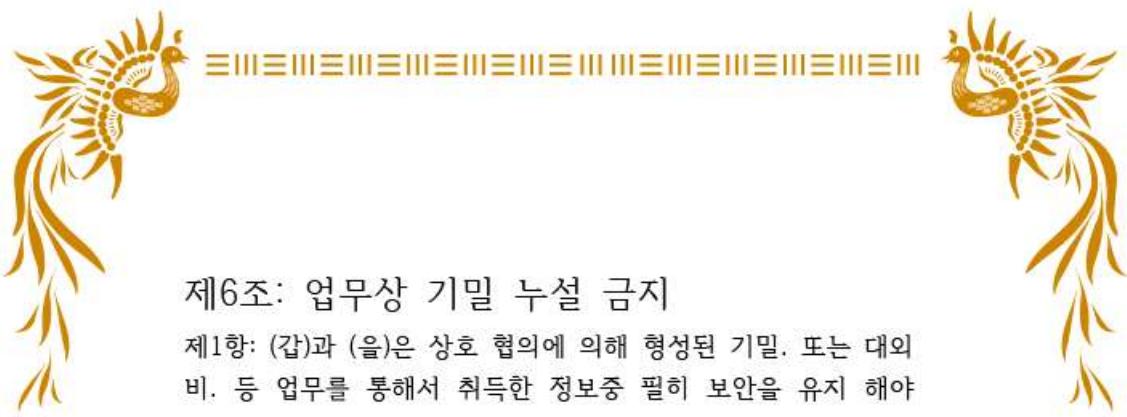
제4조: 결제 방식

제1항: (갑)은 거래은행을 개설하고 개설된 거래 통장으로
1주에 10000원 1000주 1000만원을 입금완료 했을시에는
판매원에서 전지지갑을 설치하도록 안내한 후 설치가 끝
났을 때에는 곧바로 판매원인 (을)에게 구입 액수 만큼의 코인
을 입금해주어야 한다.

제5조: 판매행위 이익발생조치안건

제1항: 판매원은 은행을 개설하고 판매 액수에 대한 지역자금
은 판매원이 직접 받아서 관리한다. 다만 페이 판매시 본사에
서 정한 페이 대금은 바로 즉시 본사계좌로 송금을 해야 한다

제2항: (갑)과 (을)의 대금 송금 또는 페이 송금원장은 반드시
필기로 작성해야 하며 복사본 1부와 원본 1부를 별도 장부에
기입 하여 관리 보관하기로 한다. 각 기록된 장부는 월별정산
시나 분기별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자료로 상호 대조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6조: 업무상 기밀 누설 금지

제1항: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형성된 기밀, 또는 대외 비, 등 업무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중 필히 보안을 유지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인에게 누출하거나 그와 같은 유사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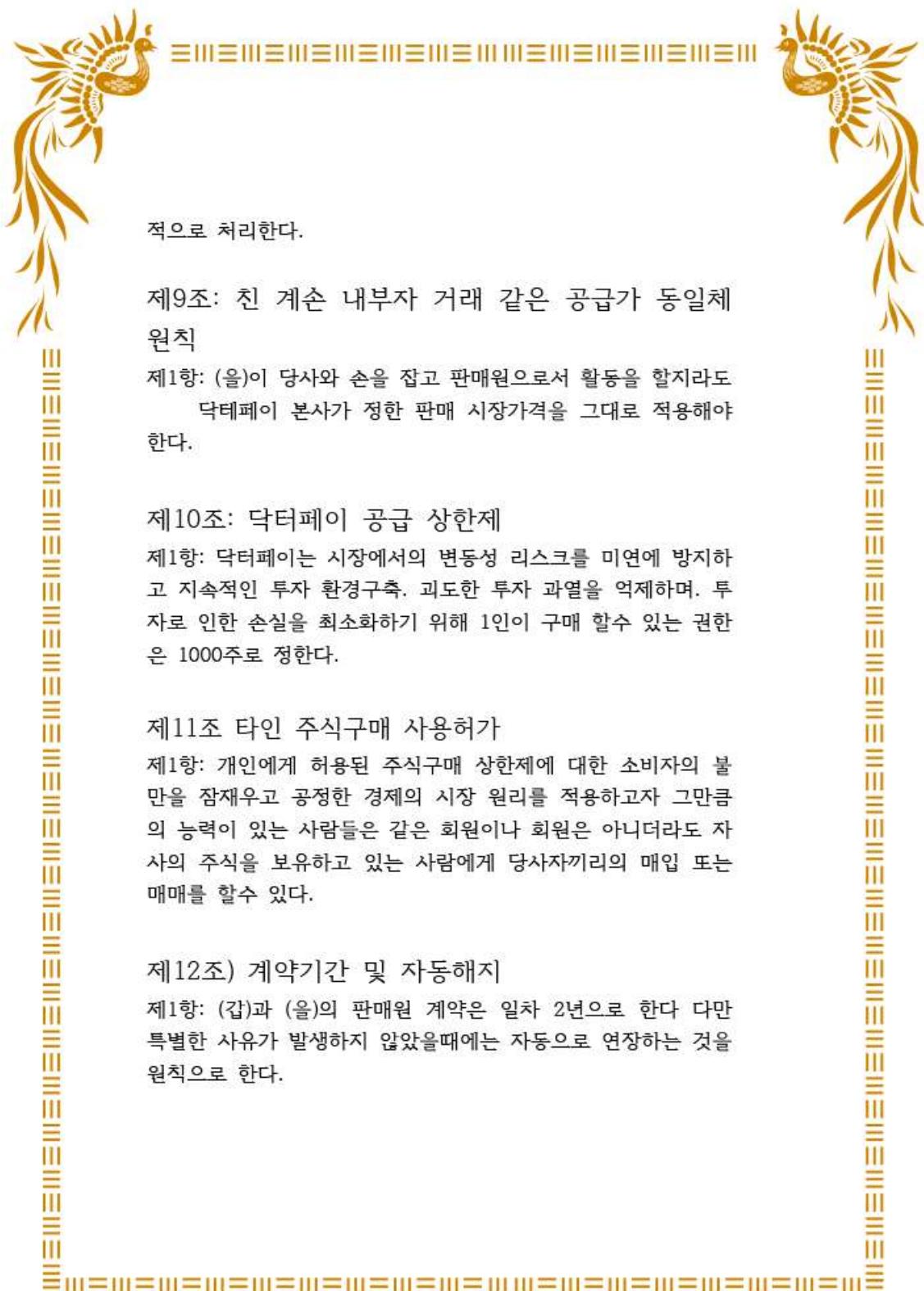
제7조: 명예 훼손 및 사기 윤리규정 위반금지

제1항: (갑)과 (을)은 닥터 코인사업과 관련하여 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페이등 기타 정보에 대하여 그 정보가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개인의 사익을 취하기 위한다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여 개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권리를 가지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유사 행위를 통해서 금품을 갈취 또는 사기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 법 위반 행위 당사자 처벌 원칙

제1항: (갑)과 (을) 양인은 본 사업건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가 아닌 타권리, 또는 본사의 방침에서 벗어나 법을 위반하여 자행된 행위로 인해 법 소추를 받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법의를 자행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2항: 본 사업건과 관련하여 발생 되는 타자의 재산상 손해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갑)과 (을)은 상호 당사자 처벌 원칙에 따라서 (갑)과 (을) 양인중 재무·변제해야할 손배 등 사건은 개별



적으로 처리한다.

제9조: 친 계손 내부자 거래 같은 공급가 동일체 원칙

제1항: (을)이 당사와 손을 잡고 판매원으로서 활동을 할지라도 닥터페이 본사가 정한 판매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제10조: 닥터페이 공급 상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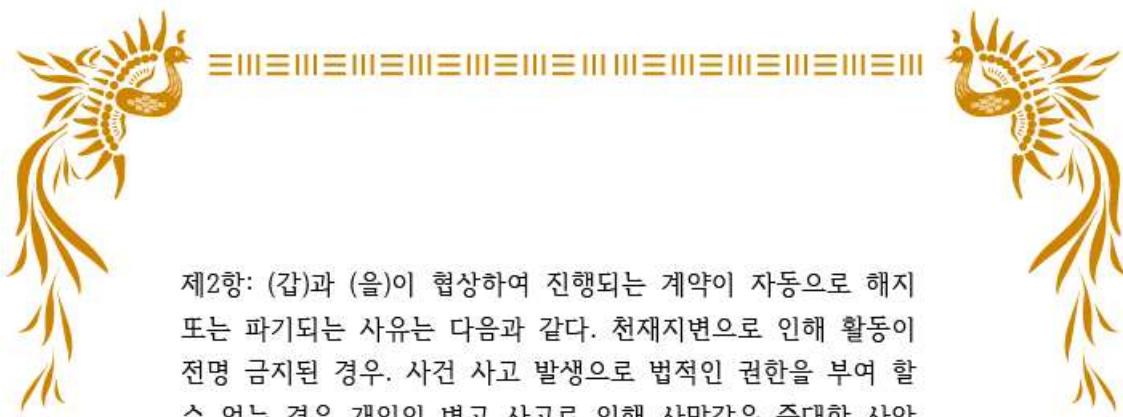
제1항: 닥터페이는 시장에서의 변동성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인 투자 환경구축, 과도한 투자 과열을 억제하며, 투자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이 구매 할수 있는 권한은 1000주로 정한다.

제11조 타인 주식구매 사용허가

제1항: 개인에게 허용된 주식구매 상한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공정한 경제의 시장 원리를 적용하고자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회원이나 회원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사자끼리의 매입 또는 매매를 할수 있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자동해지

제1항: (갑)과 (을)의 판매원 계약은 일차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때에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갑)과 (을)이 협상하여 진행되는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 또는 파기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활동이 전면 금지된 경우. 사건 사고 발생으로 법적인 권한을 부여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변고 사고로 인해 사망같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이민등 국내에서 사업을 활동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의견을 경취하여 파기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

제13조: 계약의 효력발생

제1항: 본 계약서는 양인이 같은 시각에 서명 날인 한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 양인은 이와같이 상호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판매원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또는 양인이 계약을 위반한 문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당사자 관할 법원을 상대로 진의를 다투기로 한다.

위 계약서는 후일을 기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년 월 일



(갑) 본사: 대표이사 이현규

법인 번호:

통신 사업자 번호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

(갑) 판매원: 대표 000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번호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